

의안번호	2201483
의 퇴 인	박상혁의원
회 답 일	2024. 8. 9.
추계번호	24D1724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및 제 5조(영주귀국·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)	- ‘국내유족’을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로 정의함 -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,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, ‘국내유족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 및 제 5조(영주귀국·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국내 유족 추가(안 제2조 및 제5조)

-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 현행법 및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,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등의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특별생계비 매월 1일당 75,000원,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2인 1가구 기준 1,7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¹⁾
- 개정안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자 및 자녀를 ‘국내유족’으로 정의하고,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착

1) [참고 1]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정착지원 현황

지원을 국내유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국내유족에게 지급되는
지원금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현재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에 대한 현황자료가
없고²⁾, 국내 유족에게 지급될 지원 항목, 지원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
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

2) 재외동포청에 따르면, 현재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국내 유족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

[참고 1]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정착지원 현황

-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(1인당 매월 75,000원) 지원
-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(2인 1가구 기준 17,700,000원) 지원
-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(1인당 1,400,000원)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 등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 급여를 지원
: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를 결정하며, 특별생계비는 소득으로 미산정

자료: 2023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, 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